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대비표

2021.1.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1조(약관의 <u>적용</u>) <생 략></p> <p>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1. 1명당 1개의 계좌만 <u>개설</u>할 것</p> <p>2. <u>(신설)</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신설</u>)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u>한 신탁계좌일 것</p> <p>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p> <p>4. 신탁기간이 <u>5년</u>일 것</p> <p>5. <u>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u></p> <p align="center"><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p> <p>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u>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u>)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u>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p>	<p>제1조(약관의 <u>목적</u>) <현행과 동일></p> <p>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1. 1명당 1개의 계좌만 <u>보유</u>할 것</p> <p>2.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삭제)한 신탁계좌일 것</u></p> <p>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p> <p>4. 신탁기간이 <u>3년 이상</u> 일 것</p> <p>5. <u>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2\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div> <p>② <u>(좌동)</u></p> <p>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p> <p>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p>	

<p><u>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p> <p>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어민</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u>가입 당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p> <p>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p> <p>3. <u>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u></p> <p><u>③ (신설)</u></p> <p>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p> <p>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p> <p>③ 신탁기간 <u>(5년)동안</u>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u>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u></p> <p>2. (삭제)</p> <p>3. (삭제)</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u>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p> <p>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p> <p>3. 「<u>조세특례제한법</u>」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p> <p><u>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p> <p>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p> <p>③ 신탁기간 <u>(3년 이상)동안</u>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p> <p>제5조(신탁기간)</p> <p>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p>
--	--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6조(대리인의 지정)

< 생략 >

제7조(운용내역 확인 등)

② 위탁자 본인의 ~ < 생략 >

제8조(법적절차) ~ 제15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 생략 >

제16조(중도해지) ①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신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 좌동 >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② 위탁자가 본인의 ~ < 좌동 >

제9조(법적절차) ~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 좌동 >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 제3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어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가입 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입 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탁기간(5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

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p>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p> <p>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2조에서 정한 보수의 50%로 계산한다.</p> <p>⑤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p> <p>제18조(최종계산) ~ 제19조(담보제공) < 생략 ></p> <p>제20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고신고 등) ~ 제23조(특약) < 생략 ></p> <p>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p> <p>제25조(분쟁조정) ~ 제28조(신탁계약서 작성) < 생략 ></p>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3. 환매조건부채권 	<p>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p> <p>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50%로 계산한다.</p> <p>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p> <p>제19조(최종계산) ~ 제20조(담보제공) <좌동></p> <p>제21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으로 (삭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2조(사고신고 등) ~ 제24조(특약) <좌동></p> <p>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p> <p>제26조(분쟁조정) ~ 제29조(신탁계약서 작성) < 현행과 동일 ></p>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내지 7.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3. 환매조건부채권 	
--	--	--

<p>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적금·예탁금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7. <u>(신설)</u></p> <p>*「소득세법」제17조 ~ <생략></p> <p>[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생략></p>	<p>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적금·예탁금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7. <u>주권상장법인의 주식</u></p> <p>*「소득세법」제17조 ~ <좌동></p> <p>[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현행과 동일></p>	
--	--	--